발간등록번호

31-9770931-001671-01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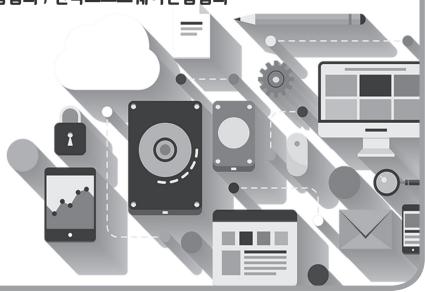
# 금융권 SW산업

#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2018. 9. 11. 화 10:00 - 12: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주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일시/장소 : 2018년 9월11일(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주관 : 고용진의원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사전순서 09:30~09:5	8	등 록	
	2″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3″	기념촬영	
개회 10:00~10:25 (25분)		[개회사]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	
	20″	[인사말]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축 사]	
	30″	[기조발제]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발제 및 토론 10:25~11:55 (90분)	각 10″	[패널토론]  [좌 장] 오재인 단국대 교수 [토론패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	
전체 토론 11:55~12:00	5″	질의응답 · 폐회	

# 차례 Contents

개회사	▶ 고용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	·· 1
인사말	▶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	3
	▶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5
축 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7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
	□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	11
기조발	रा।	
<b>▶</b> 김5	동승	
목모		13
패널토	론	
<b>▶</b> 신영		
	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1
▶ 주홍		٥-
	당위원회 전자금융과장 ····································	35
▶ 곽병		20
ਮਾ <sup>ੁ</sup> <b>ੋ 김</b> 등	가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	27
	5~ - - 은행연합회 IT부장 ······	/13
전속 ▶ <b>조</b> 양		4)
	장도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	47
<u>고</u>		<del>-</del> 7/
	V 대표 ······	51
• • •	• "—	٠.

# 청간지 삽입예정



고 용 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오늘 「금융권 SW산업 헤드 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속도입니다.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도와야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성장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 핀테크,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의 유력 분야는 금융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금융분야의 비중은 공공분야와 함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 로 큰 시장입니다.

오늘 논의의 무대인 SW산업은 지식기반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산업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인재들에게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가치가 생산, 유통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적정한 가치 판단과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SW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흡하게 되면 관련 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고 기업의 성장이저하되기 마련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헤드카운팅 관행은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결과물을 책임지면서 인력까지 관리는 받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력과 무관하게 투입인력 수 기준으로 근로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발주사로부터 과도한 근태 관리를 받거나, 투입된 인력의 교체를 요구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금융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SW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한다면 공공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이 금융권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 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 SW산업 혁신성장과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막아온 혜 드카운팅 관행이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공공 SW 사업 계약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만큼. 금융권에서도 이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 용 진



박 진 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박진국입니다.

먼저 금융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본 토론회에 걸음해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많은 분들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면 금융과 IT의 융합이 이뤄낼 혁신 가능성에 주목하고 밑거름을 일구기 위한 자리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융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권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고용진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융권소프트웨어산업 헤드카운팅 관행개선을 위한 고견을 들려주실 김도승교수님과 신영수교수님, 금융위원회 주홍민과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곽병진과장님, 전국은행연합회 김응수부장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실장과 산업현장을 전달해주실 VTW조미리애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더욱 의미있게 이끌어주실 좌장 오재인교수님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금융소프트웨어 사업관리를 투입되는 기술자들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하는 헤드카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드카운트로 사업관리를 하면 발주자가 기술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산출물의 질이 아니라 발주자들의 일정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자들은 과도한 근로에 시

달리고, 휴식·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금융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더 나은 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세 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 없이는 금융소프트웨어의 발전도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의 계약방식 변화와 사업관리 체계 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공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고시개정을 시작으로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1/4정도를 차지하는 금융산업도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권 소프트웨어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은, 금융소프트웨어 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개선 안들이 논의되고, 금융과 소프트웨어가 산업융합의 모범사례가 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 다.

다시 한 번 본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고용진 의원님을 비롯해 바쁜 일정 중에도 애정과 관 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많은 귀빈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현 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 혁명의 성패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 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4차산업의 중심인 SW산업의 성장은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우리 협회에서 발표한 'SW천억클럽' 통계자료를 보면 선도기업이라 볼수 있는 '17년 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들의 매출은 전년대비 9.4%,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9.0%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실질적 성과보다는 사업에 투입된 사람의 숫자로만 사업을 관리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은 그간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개발자처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공공분야에서 헤드카운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상, SW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SW산업의 22%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해 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식기반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SW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SW산업이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보고 서에는 국내 SW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SW시장의 증가율 은 7.5%로 세계 SW시장의 증가율인 17.1%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시장규모는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카운팅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헤드카운팅 방식 하에서 SW기업들은 그동 안 발주사로부터 과도한 근태관리를 받거나 투입된 인력의 교체를 요구를 받는 등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주업체의 수익성과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려 왔던 '헤드카운팅'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 SW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의 경우 투입인력관리를 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헤드카운 팅 문제가 개선된다면 SW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의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결 과 R&D, 우수인력 양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재투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금융권 SW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 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방안이 금융 권 SW사업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고 견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CT 분야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0/ 31 원



홍 영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오늘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님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SW(IT, 인터넷 포함) 관련 기업이 7개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SW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SW산업, 기술 발전과 함께 전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높은 기술력, 우수 제품,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나 자본 기반이 아니더라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장은 그다지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권을 포함한 SW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헤드카운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입인력 기반으로 SW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해옴으로써 개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SW산업이 4D업종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 다.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현장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SW개발자에 대한 우대 방안 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SW개발자들이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든든한 뒷 받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영 표



민 병 두 국회 정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입니다.

창의성과 지식 기반의 소프트웨어(SW)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 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금융 산업은 IT기술, 핀테크, 블록체인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W산업은 창의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국내 SW산업 증가율은 2018년 기준 약 7.5%로 글로벌 SW시장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불합리한 SW시장의 수· 발주 제도, SW 가치 보장 미흡 등의 SW 소비국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산업에도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금융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SW산업과의 협력관계를 감안해 공공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이 금융권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입인력 기반의 평가 및 관리 방법으로 인한 개발자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SW의 성능, 품질,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구조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개선시켜야 합니다.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통해 금융산업 및 금융소프 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SW 기술자들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도 혁신성장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은 산업 환 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용진 의원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회정무위원장 민병두  $\mathbb{S}$   $\mathbb{S}$   $\mathbb{W}$  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조발제]

• **김도승 교수** (목포대 법학과)



# 금융소프트웨어사업 인력관리체계 개선 과제 -SW산업과 금융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8. 9. 11 /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실 주관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요 내용

논의의 배경 - 투입인력관리 방식의 폐해

■ 왜 금융인가 1: 산업정책적 실용성

왜 금융인가 2: 공정거래환경 조성

왜 금융인가 3: 개발자 처우개선

마치며 - 동반성장의 가치







	논의의 배경	
		(M)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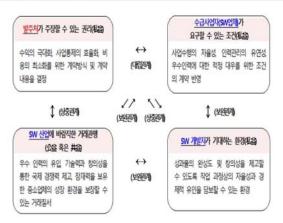
■ 현상과 진단

· 2018년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의 중가율은 약 7.5%로 글로벌 소프트웨어시장 중가율(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성장세이고,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 우리나라 SW산업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HW 중심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가치 보장 미흡 등으로 SW 소비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불합리한 발주관형 및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 도급계약임에도 투입인력을 관리(해드카운팅)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SW 기업의 수익성 악화,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탈현상이 지속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악화 요인
- 더욱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특히 공공 SW사업 )이 정체되면서 전체 SW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인재유입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산업발전 전반에 적신호
- 제조업과 ICT의 용합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용합의 매개체가 되는 SW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위해 SW사업의 관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내지 성과관리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 헤드카운팅을 둘러싼 갈등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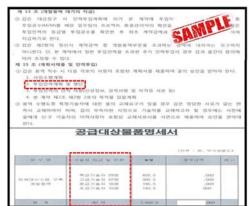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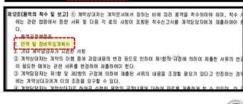
- 발주처의 계약체결 및 내용결정상 자유 vs. 수급사업자(SW) 업체의 이익 보장
- 발주처의 작업환경 통제권 vs. 개발자의 자율적, 창의적 작업환경 여건
- 발주처의 사익극대화 욕구 vs. SW산업 관련 공익(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의가 큼



### 도급계약인 SW사업에서 인력관리의 이질성

- " SW사업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린하는" 도급계약
  - 도급계약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 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에 서 보수의 산정은 투입인력의 수가 아닌 일 의 완성여부에 따라 결정됨.
- 수급인이 아무리 많은 노무를 투입하더라 도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인이 노무를 적게 투입하더라 도 일이 완성되면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
  -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의 투입인력의 수는 보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오로지 산출 되는 성과물이 계약의 목적에 충족하는지가 보수 산정의 기재로 작용함







### 성과중심 사업관리로의 전환 필요성

■ 사업관리의 헤드카운팅 관행: 비효율적 인력운용과 개발자 근로환경 악화 요인

-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의 관행은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라 사업비를 산 정하고 수행과정을 관리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관리(이른바 헤드카운팅) 방식으로 진행
  - [원인] 발주자는 사업관리수단으로 M/M투입실적 관리를 선호하고, 수급자인 기업은 M/M투입량으로 수주경쟁
  - [고질적 현상]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09년 기능점수(Function Point)방식을 원칙으로 하 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현실적인 필요와 관행에 따라 헤드카운팅 방식은 남용되어 왔음

구분	기능점수 방식	헤드카운팅 방식
정의	- 발주자 관점에서 업무적 요구기능을 측 정하는 방식	<ul> <li>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 원에 대한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식</li> </ul>
산정방법	<ul> <li>발주자의 요구사항 기준으로 기능을 식별하여 규모를 산정</li> </ul>	<ul> <li>발주자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를 추정</li> </ul>
난이도 측정	- 기능구현에 따라 난이도 적용 가능	- 투입인력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등)으로 구분
장점	<ul> <li>측정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정의되어 있 어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가능</li> <li>산정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임</li> </ul>	- 투입되는 인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산정이 용이
단점	<ul> <li>규모 산정을 위한 전문성 필요</li> <li>정확한 측정을 위해 세부 요구사항 도 줄이 선행되어야 함</li> </ul>	<ul> <li>논리적인 산출근거 도출이 불가능하여 비용산정이 불투명함</li> <li>SW개발의 생산성을 유도하지 못함</li> </ul>

\*표: "SW사업대가 개정, 헤드 카운팅 방식 탈피한다", 지식 경제부 보도자료, 2009.5.20.



### 제도 개선 – 성과와 한계

■ 제도 개선의 방향: 인력관리 중심의 SW사업관리 폐지(헤드카운팅 금지)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는 m/m 방식의 사업대가 산정시 이를 통한인력관리를 금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공공SW사업 관리방식(
  - '사키고, 전체 인력이 아닌 핵심인력 중심으로 투입인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최근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를 ? 최근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 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 중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간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 한 기존 내용을 삭제. <mark>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를 전면 급</mark>
- 현행 인력관리 금지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 즉 공공SW사업에만 적용될 뿐 민간부문의 SW사업에는 적용되지 못함
- 이처럼 민간 소프트웨어사업은 정부가 사업관리의 방식에 대한 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정부의 이러한 개선 노력이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헤드카운팅 관행을 해소할 필요성 제기
  - 금융SW사업은 국내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5.5%)이 클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하고, 최근 금융에서 SW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확산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인식과 공감

서울경제

2018년 05월 25일 금요일 031면 오페니인

#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

유망 직업이지만 장시간 근로 등 힘든 점도 많죠

사업 현단수 회에게 함께 개최

\*\*안전면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선수의 집에 지는 나는 '전에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선수의 집에 지는 나는 '전에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선수의 집에 지는 나는 '전에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선수의 집에 지는 나는 '전에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선수의 집에 지는 나는 '전에 가는 다가 '소설' 및

대신수 교육 '소설' 및

대신

## 



## SW도 근로단축 불똥…계약방식 바꾼다

## 왜 금융인가 -산업정책적실용성-



### SW산업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 IT서비스 시장 중 IT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산업은 금융, 제조, 공공, 도소매, 통신 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융 IT시장은 25.5%, 공공 IT시장(교육포함)은 2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IT시장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2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22%(교육포함)를 차지하는 공공과 동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47.5%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SW는 자사제품 보는 서비스의 백십 구성 요소입	SW는 자사 제품 있는 서비스 이용을 오나타입해거나 관리하는데 쓰여 이를 통해 수익을 접출하는 핵심요소	SW는 고용점 제용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사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함	SW는 앞서 언급된 모든 부분에 제되됨	SW는 양서 언급된 모든 부분에 배당되지 않음
AMILE	19%	30%	1994	32%	0%
	16%	35%	19%	29%	0%
	20%	20%	33%	20%	2%
	13%	38%	25%	25%	0%
	24%	24%	27%	22%	2%
	24%	1894	34%	22%	2%
	19%	1916	22%	40%	0%
	14%	39%	1916	32%	0%
	24%	36%	21%	19%	0%
BIN	19%	29%	24%	27%	1%



### SW산업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 기존 금용IT시장이 계정계, 정보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를 요구해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새로운 신규 금융 서비스 등장 및 지원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까지도 고려해야
- 소프트웨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 할 수 있음. 국내 금융산업은 경쟁력 요체라고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미진했던 결과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의식과 관행도 금융선진국의 의식 및 관행과는 큰 괴리를 보여 왔던 것으로 평가됨
- 헤드카운팅 관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역시도 저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금융제도 개혁 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방식에 있어서 헤드카운팅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획기적이 고도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히 요구됨

지급결제	해외송급	자산관리/투자	대출	클라우드 편당
•기준 신용카드나 은 행계좌 등을 사용하 는 On/Off line 및 모 바일 결재를 대체	• "승급은행-중계은행- 수취인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승급 업무 를 IT업체의 승급 플 랫동을 통한 서비스 로 대체	소액투자에 적합한 온라인 기반의 투자 서비스 제공(소액 투 자자 대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고 자금 운용)	대출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계 예할 수행하거나 소 예대출을 직접 취급	소액투자자를 모집하고 신성벤처기업에 연결 서비스 제공 (소 액투자를 통한 투자 위험 분산, 벤처기업 은 투자 유치)
Ex) Paypal, Alipay. 스타벡스, 카카오월렛, Zapp, PhotoPay 등	Ex) TransferWise, Azimo, Currency Fair §	Ex) Nutmeg, Rplan, Blue Speek Finacials	Ex) Zopa, Alibaba 😸	Ex) Seedrs, Funding Circle &
Ä		Paradonal Control of C		3



왜 금융인가-<sub>공정거래환경조성</sub>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할 권리는 본질적으로 인정됨. 더욱이 계약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국가 등 제3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 계약자유 내지 사적자치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상태에서 '흥정'을 거친 산물인지가 중요하며, 이러 한 균형이 깨질 경우 공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자치라는 "자유"에 우선
- 거래상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현실 거래관계 속의 경제력,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상대적 지배력 을 보유하게 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거래상대방 사업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줌으로써 당사자들이 속한 시장 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있음
- 헤드카운팅의 경우 사안의 본질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경영적 판단 내지 사업수행상의 자율성, 수익성에 대한 임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 헤드카운팅는 수급사업자의 인력 투입 및 관리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통제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는 거래상 지위남용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불이익제공이나 경영간섭행위에 해당 할 가능성이 큼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경영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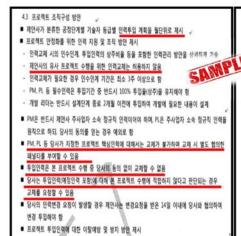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 ▶ [위법성 판단]
-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거나; 상품의 성능 및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대리점 및 영업 직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의 무분별한 대금 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간섭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헤드카운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기술인력의 작업장소를 일방 지정하여 파견 근무중심의 작업 환경을 조성 하거나, 우수 개발자임에도 발주처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개발능력과 무관하게 발주처의 친분 등 의 이유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관행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 형 위가운데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



### 위법한 경영간섭 해당성

제안요청서(RFP) 등 계약문서에 인력투입 계획 제시 요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투입인력현황 제시, 인력교체는 수급자 임의 변경 불가(발주처는 교체요청 가능), 정기보고시 인력투입 보고 요청 등을 명시



4.113 현대 관련사항

ORL 기통 당자가 처형하는 모르트트 주요 반역에 대해서는 교체가 불가하여 교체 시 변수 기통 당자가 처형하는 보르트트 주요 반역에 대해서는 교체가 불가하여 교체 시 변수 기료에 상혀 두만 단적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당사의 중만 없이 교체할 수 없음 이 투입인적(여행인적 모함)에 대해 당시는 사원 인대부 등의 연역 역량에 대한 권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해 당당 업무 수행에 해당 인역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 가 받은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7.3 인력 투입 계획

O 수행 공정 및 일정 계획을 고려한 인력 투입계획 제시

- 투입연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 상주 인력이 있을 시 이를 별도 표시
- 제안서 제출 당시 미 확정된 연락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표시
- 상용 SAW, 인프라 장비 등 외부 지원 인력에 대한 투입 계획 제시
- 자체 인력 이외의 외주 인력 포함 시 외주 인력의 역할과 책임 명시 등
   투입 인력의 Quality 및 변동 최소화 방안
- 참여인력 요약표 (청부4)
- 주사업자 정직원 비율(정부5)
   장여인력 이력사항 (정부6)

### [청부4] 투입인력 계획

7#		48	44	직위	참여 역할	참여 비율	원제 경력	개피함 경력	기술 등급	보유 자격	자사 인력 여부
且在司机设计	PM	808	000	0141	PM	100%	2015	515	40	기술 사	¥
	사업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 ▶ [위법성 판단]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제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 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 헤드카운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단가를 M/M 방식으로 산정하거나 도급계약후 검수완료후 M/M 방식으로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으로 과업을 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an/Month 미투입 부분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을 시킨 경우 등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가능성



### 불이익제공 해당성

- 감액정산 사례(규모 55억, 기간 8개월, <u>발주:금융기관, 사업명</u>:\*\*관리시스템구축)
- '17년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된 A프로젝트는 발주기관이 RFP(제안요청서)에 인력 투입계획을 요청하였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투입계획을 포함하여 제안.
- 계약서에는 "투입인력명세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야 하며,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요구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즉시 인력을 교 체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 주기관이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
- 또한 "대금지급 시 투입된 등급별 총 M/M가 인력투입계획과 상이한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함.(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발주사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 해당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우수인력 투입을 통해 계획된 M/M 보 다 인원을 적게 투입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지만 최종 대급청구 시 계획대비 차이 나는 만큼의 투입 인건비(MM)를 정산하였음.(실질적으 로 기 투입된 인력이 야근 및 휴일근무로 과업을 완료함

- 도급계약으로 과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an/Month 미투입 부분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사례(\*\*\*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기간 중에 비공식적으로 인프라 도입을 위한 PoC 지원요청 받음. (발주처가 직접 준비, 진행, 보고서 제출을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임)
- SL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고, 2M/M 정도가 투입됨.
- 사전 자료 및 업체조사, PoC 계획서 작성, PoC 진행 보고서 작성, PoC 진 행지원 (업체별 진행사항 및 결과 확인), PoC 결과 수집 및 정리, PoC 결과 보고서 작성
- · 프로젝트 공식 요구사항이 아닌 비공식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투입인력을 활용 하여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전체 공수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2M/M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짐.



왜 금융인가 - 개발자처우개선



### 파견업법 위반 "불법파견" 해당 가능성

불법파견의 징표(근로자가 발주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

발주자의 인력관리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해당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인력간의 관계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게 되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문제가 됨

###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4. 판단의 기준

-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 2) 업무 지시·감독권
  - ※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 ※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로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 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 ※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 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 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불법파견, 부당한 근로환경 조성

제6분(지역성대자의 근로자) ① 제약성대자는 상혀 계약의 수업과 근단하여 계약 수업에 필요하고 작업한 기술교 경험을 가는 근로자를 처리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현재에 하려. 때문 근로자의 현재에 대하여 전함·근리· 급액성의 역성을 제약 한다. ② 제약성대자는 제약당자가 제약성대가 제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제약을 수행한 작업하지 아니라다고 인칭하여 여의 교체를 모구할 때에는 백급한 기상이 없는 한 역시 교체하여에 하여 제약당자의 승인 회에는 교체한 근로자를 당해 제약을 수별을 위하여 대시 제품한 수 없다. ③ 제약성대자는 항체 제약을 수별을 위하여 대시 제품한 수 없다. ③ 제약성대자는 항체 제약을 어떻게 해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제장금만 제6조계한 및 제2점을 근로 기술만 제42조를 순수하여야 한다.

문합 유작조를 운수하였다는다.

제D.S. (개발요원의 자리 및 변경)
그 '작업인의'에 원명 주입되어는 '이익 등에 입시된 무입인의을 변경하여 지는 아니 함께 수 본 제임이 또는 '의료명이라' 등에 입시된 무입인의을 변경하여 시는 아니 함께 한 본 제임이 병급하 필요하다고 고려서 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고려서 '자신 방의을 기하'를 반응되었다면 등을 자꾸 어떻게 인익으로 변경 당 수 있다.

가 숨가야만 함수 교육자 ㅋ ' ' 마르' 이 ' ' 만들어 ' 이 ' 반대는 화면하다 보다 하는 그 국제 가 ' 한 ' 마리' 이 만들은 위하여 무입된 ' ' 수 ' 한 ' 사 ' 기 인데을 때문되으로 한 안하여, 입문에 집안하지 않았다는 자꾸 이 만인 경우 ' 수 ' 한 ' 사 ' 에게 고세를 요 우일 수 있으며, ' 수 ' 한 ' 사 ' 수 있으면, ' 수 ' 한 ' 사 ' 수 있으면, ' 수 ' 한 ' 사 ' 수 있으면, ' 수 ' 한 ' 사 ' 수 있으면, ' 수 있으면,

- 제 15 조 (제회서제출 및 언력투입) ① 같은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회사를 제출하여 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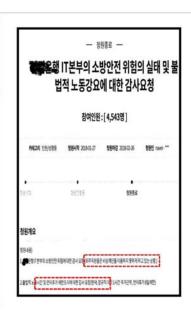
- 고 우입인역에 및 형단

  보 무입인역에 당시 위원(산성회사, 경역사원 및 자격을 시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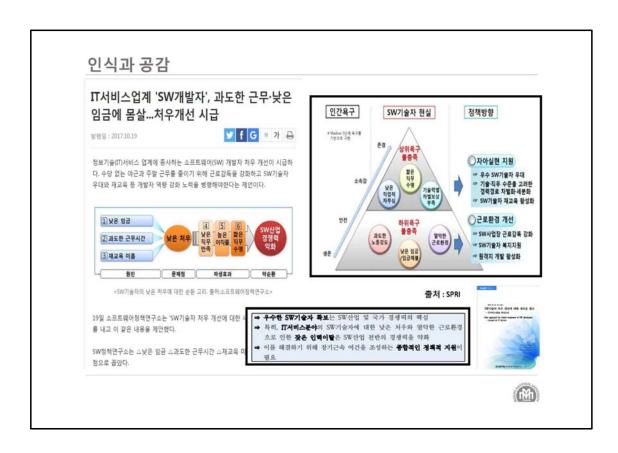
  4. 원 개역 제기조 제기원 2호의 역적을 입할지록

  8년 기역 제기조 제기원 2호의 역적을 입할지록

  6대 교회에에서 하다. 강의 부탁이한 사업으로 기술자를 고려하고가 할 경우에는 사원에 용어에 산구 기술자의 어역사원이 포함된 교체사유사용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 투입인력관리 폐지의 정당성

-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사익추구, 비용절감, 작업통제방식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헤드카운팅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계약당사자 내부 및 외부에 걸쳐 거래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내부적 측면에서는 우선 발주처와 수급업체의 이익간의 불균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공정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큰데다, SW개발자에 대한 관행에 있어서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및 노동법적 사후규제의 대상 심사 및 제재 가능성이 큼
- 외부적으로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지위남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유인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인력관리의 대상인 개발 자 개인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 마저 침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SW산업의 성장 및 발전 기반을 중대하게 훼손 하게 되는 이른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이 명확합
  - 이 같은 외부효과는 공정거래법 및 노동법 차원의 사후규제 수단만으로는 차단 및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점에서 발주처의 계약상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서라도 SW개발자 및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 헤드카운팅 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함



### 4차산업혁명시대 SW산업은 금융산업 발전의 원동력

투입인력 관리 금지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해야 할때!

- 소프트웨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 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비중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실효성없는 인력관리로 발주자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바, 인력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발주자인 금융사업자에게도 유익함
- 금융SW사업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관행적이고 불공정한 인력관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업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금융사업자가 앞 서 살펴본 경쟁법이나 파견업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자칫 상당한 법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 것임



감사합니다. dskim@mokpo.ac.kr	
	)

### [패널토롱]

• [좌 장] **오재인** 단국대 교수

[토론패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흥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

### 토롱문 1

•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Memo

Memo

### 토론문 II

•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금융위원회)

Memo

Memo

### 토롱문 III

•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emo

Memo

# 토론문 IV

• **김응수 IT부장** (전국은행연합회)

### [토론회] "금융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개최 배경		
○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 ① 금융기관과 금융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의 계약방식 변화와 ②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 제기
- □ 은행권 검토의견
  - 금융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금지 조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 검토근거 및 사유

- ① 금지 조항의 획일적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유형 존재
  - 사업유형 상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과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유형\*이 존재하며,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유형의 경우 적용이 어려움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 대가산정 방법이 "투입공수 방식 "인 경우
- ② 사업유형을 고려한 대가산정 및 예산수립 필요
  - 사업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기간 및 비용 산정을 위한 계량화가 불가능하여 예산수립 및 사업 추진이 어려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대가산정에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유형\*의 경우 투입공수방식 적용이 필요함
  - \* 1)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2)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3)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 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4)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5)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등
- ③ 사업자 선정 관련 공정성 시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 SI 개발사업의 경우 제안업체가 제시한 투입공수, 개발자 등급, 프로젝트 기간 등을 통해

제안업체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이 가능하나.

- 기능점수 방식 등의 경우는 계량화·정량화 등이 어려워 객관적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이 불가능함
-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확대 또는 저가 입찰로 인한 제안업체간 출혈경쟁의 심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 ④ 품질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력통제 관리 필요

- SI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자의 등급·능력·수행경험 등이 사업 수행 단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품질수준을 좌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 수요자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시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 등 인력통제 관리가 필요함

#### 5 안정적인 사업진행 점검을 위한 진척도 관리 필요

- 사업진행 중 진척도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투입인력에 대한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인력운영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 또는 혼란 가중의 우려가 있음

#### 6 정보보호관리 관련 문제점

-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출입통제. 접근 제어 등 보안사고 관련 사전예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7 기타 문제점

- 외국계은행의 경우 외주인력관리 글로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국내기준과 상이할 경우 이해 충돌 발생

 $\mathbb{S}$   $\mathbb{S}$   $\mathbb{W}$  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토론문 V

• **조영훈 산업정책실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패널 토의 요지

조영훈 실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헤드카운팅이 개발자 근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
  - 인력 기반의 관리방식은 발주자의 직접 노무 관리, 작업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후속 관행을 유발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음
  -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관리되는 일부 금융권 사업에서는 투입 개발자의 연차휴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금융권 헤드카운팅 방지를 위한 방안
  -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사업 현장에 헤드카운팅을 제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관리 방식이 연구되어 보급 되어야 하며, 이를 공공과 금융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필요

Memo

# 토론문 V

• 조미리애 대표 (VTW)

Memo

Memo